	<b>규정</b>		문서번호	TWP-A236	
			제정일자	2022. 12. 30.	
	<b>폐과교원에 관한 규정</b>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 목 차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폐과교원의 신분정리
- 제4조 폐과교원 조정위원회
- 제5조 폐과교원의 소속변경 절차
- 제6조 소속변경 심의 기준
- 제7조 결과 통보 및 재심
- 제8조 폐과교원의 직권면직
- 제9조 명예퇴직 등
- 제10조 전공전환 교원의 의무
- 제11조 폐과 교육과정의 운영
- 제12조 보칙

### 부칙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작성부서	교무학생처	제정일자	2022. 12. 30.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교무학생처장		산학입학처장		기획예산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 규정

문서번호 TWP-A236

제정일자 2022. 12. 30.


## 폐과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2/6

###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22. 12. 30.	폐과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

	<h1 style="margin: 0;">규정</h1>	문서번호	TWP-A236	
		제정일자	2022. 12. 30.	
	<h2 style="margin: 0;">폐과교원에 관한 규정</h2>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6조,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42조,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폐과된 학과에 소속된 교원의 신분 정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과결정일’이란 이 대학교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학과에 학과폐지를 통보한 날을 말한다.
2. ‘폐과기준일’이란 편제정원이 0명이 되는 학년도 학기 개시 직전일을 말한다.
3. ‘폐과교원’이란 폐과로 결정된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을 말한다.
4. ‘소속변경교원’이란 폐과교원 중에서 전과 또는 전공전환을 통해 다른 학과로의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을 말한다.
5. ‘전공전환’이란 교원이 소속변경 희망학과의 석사나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신분정리’란 폐과교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말한다.


**제3조(폐과교원의 신분정리)** ① 폐과교원은 폐과결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속변경(타 학과 재배치)
2. 명예퇴직(희망퇴직)

② 제1항의 소속변경 신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총장은 폐과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폐과교원 중 교원확보율 및 대학상황 등을 고려하여 폐과교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제4조(폐과교원 조정위원회)** ① 폐과 교원의 소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폐과교원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이 되고 기획예산처장, 산학입학처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3인은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폐과 소속 교원인 경우 의결에서 제척하며, 이로 인해 위원회 의결이 불가한 경우 총장은 제2항의 위원정수 범위내에서 위원을 변경, 임명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과장이 된다.
- ⑦ 위원회는 소속변경 희망학과의 적정 교원확보율 범위 내에서 ‘폐과교원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하며, 희망학과에 대한 기여도, 학위취득 이행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소속변경 희망학과 학과장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b>규정</b>	문서번호	TWP-A236	
		제정일자	2022. 12. 30.	
	<b>폐과교원에 관한 규정</b>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제5조(폐과교원의 소속변경 절차)** ① 폐과교원의 소속변경은 1회에 한하며, 소속변경 신청은 폐과결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소속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타 학과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속학과 변경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속변경 실천계획서’를 폐과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무학생처장은 폐과교원이 희망하는 학과에 소속변경 신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해당 학과는 통보일 10일 이내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속변경 요청에 따른 학과의견서’를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교무학생처장은 폐과교원의 ‘소속학과 변경 신청서’와 ‘소속변경 실천계획서’,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의견서’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과교원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에 따라 폐과교원의 소속변경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다.
6. 소속변경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 중 전공 불일치 교원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전공전환을 위해 타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에 등록하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전공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소속변경 심의 기준)** ① 폐과교원의 소속변경 및 면직심의를 위한 위원회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과교원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 평점 70점 이상: 소속변경 승인
2. 70점 미만 : 소속변경 불허(면직)


② 소속변경 대상자는 학과별 적정 교원확보율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교원 중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해당학과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7조(결과 통보 및 재심)** ①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소속변경 대상자 및 탈락자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소속변경 탈락 교원은 그 사실을 서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재심을 요청받은 즉시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중에는 당해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폐과교원의 직권면직)** ① 폐과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한다.

	<h1 style="margin: 0;">규정</h1>	문서번호	TWP-A236	
		제정일자	2022. 12. 30.	
	<h2 style="margin: 0;">폐과교원에 관한 규정</h2>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1. 소속변경 미 신청 교원
2. 소속변경을 위한 석사학위 취득(박사과정 수료) 기한을 초과한 교원
3. 소속변경 신청 교원 중 탈락으로 확정된 교원

② 폐과교원의 직권면직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변경 미 신청 교원 : 폐과기준일
2. 소속변경을 위한 석사학위 취득(박사과정 수료) 기한을 초과한 교원 : 해당 학년도 말일
3. 소속변경 신청 탈락 교원 : 폐과기준일부터 1년이 경과된 학년도 말

**제9조(명예퇴직 등)** ① 폐과교원의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은 폐과결정일 기준 정년퇴직일까지 잔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폐과교원의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명예·희망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전공전환 교원의 의무)** ① 전공전환 교원은 전공전환 기간 중 책임시수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전환 교원은 전공전환 기간 종료일까지 학위취득증명서, 최종결과 보고서를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전환 교원은 전공전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교무학생처장에게 중도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속변경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 중 전공전환 교원의 교육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폐과 교육과정의 운영)** ① 폐과가 결정된 학과는 폐과기준일까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폐과기준일 이후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참고하여 수강 지도를 할 수 있다.

1. 총 전공 이수학점이 졸업학점에 50% 이상인 경우 : 일반교과목 또는 교양 교과목 수강 지도
2. 총 전공 이수학점이 졸업학점에 40% 이상인 경우 : 2년제 9학점(3년제 12학점) 전공 교과목 개설 또는 전과 유도
3. 총 전공 이수학점이 졸업학점에 40% 미만인 경우 : 전과 유도

③ 폐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사규정 제17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1. 5명 미만 :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이수가 필수인 국가 기술자격(면허) 취득 과정은 예외로 한다.
2. 6명 이상 : 2강좌 이내 개설만 허용

	규정		문서번호	TWP-A236	
			제정일자	2022. 12. 30.	
	폐과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일자		
			개정번호	0	페이지

③ 제2항과 제3항이 상충되는 경우 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폐과 결정된 학과의 폐과결정일은 제2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공포한 날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 소속변경 실천 계획서

### 1. 담당 가능 교과목[필수]

	1학기			2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점	구분	교과목명	학점
소속변경 학과개설 교과목명	전공					
	교양					

### 2. 전공일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사유)

### 3. 소속변경학과 전공관련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계획

### 4. 소속 변경학과에 대한 기여(전공교과목 감소율 등)

### 5. 기타사항

※ 실천계획서는 각 항목별 최소 A4 1매 이상씩 작성하십시오.

※ 증빙자료(논문, 과제물 등)는 별첨하십시오.



[별지 제3호 서식]

## 소속변경 요청에 대한 학과 의견서

신청교원	소속		직급		성명	
항목(배점)		점수		비고(의견)		
전공일치도 (15점)		15점 : 일치 7점 : 유사전공 0점 : 불일치		※ 학위취득계획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정		
변경학과 기존교원과 전공 및 교과목 중복 여부 (10점)		책임시수 확보 정도에 따라 4점~10점		※ 책임시수 충족 가능여부, 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변경학과 기여도 (5점)		1~5점				
합계점수 (30점)						
종합의견						

「폐과교원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의견을 소속학과 전임교원 회의를 통해 합의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교원

(서명)

(서명)

(서명)

동원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폐과교원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

현소속	직급	성명		
심사기준		배점	점수	비고
1. 학과의견서	30			
2. 전공의 일치도	10			
3. 입시활동 결과	10			
4. 취업활동 결과	10			
5. 강의평가 결과	10			
6. 교수업적평가 결과	10			
7. 종합평가	20			
합계	100			

20    년    월    일

폐과교원 조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동원대학교 총장 귀하

## [평정기준]

### 1. 학과의견서

- 학과에서 제출한 학과의견서의 점수를 반영한다.

### 2. 전공의 일치도

- 전공 일치도는 신청자의 전공과 변경하고자하는 학과의 전공 일치도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일치(10점)
- 유사전공(7점)
- 강의가능(4점)
- 불일치(0점)

### 3. 입시활동 결과

- 입시활동 결과는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입시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1년당 2점을 부여하며 최종 10점 만점으로 평정(만점 : 2점 X 5년 = 10점)
- 5명 이상 모집(2점)
- 3명 ~ 4명 모집(1.5점)
- 1명 ~ 2명 모집(1점)
- 0명 모집(0점)

### 4. 취업활동 결과

- 취업활동 결과는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취업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1년당 2점을 부여하며 최종 10점 만점으로 평정(만점 : 2점 X 5년 = 10점)
- 5명 이상 (2점)
- 3명 ~ 4명 (1.5점)
- 1명 ~ 2명 (1점)
- 0명 (0점)

### 5. 강의평가 결과

- 결과강의평가 결과는 신청자의 최근 5년간의 강의평가 평점을 산술 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매우우수: 4.7점 이상(10점)
- 우수: 4.5점 이상 4.7점 미만(8점)
- 보통: 4.3점 이상 4.5점 미만(6점)
- 미흡: 4.0점 이상 4.3점 미만(4점)
- 매우미흡: 4.0점 미만(0점)

### 6. 교원업적평가 결과

- 업적평가 결과는 최근 5년간의 업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신규임용 이후의 교수업적평가 결과만 적용)
- 기존학과로 소속변경시 1년당 2점을 부여하며 최종 10점 만점으로 평정(2점 X 5년 = 10점)

- S등급(2점)
- A등급(1.5)
- B등급(1점)
- C등급(0점)

#### 7. 종합평가

- 신청자의 재직기간 중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 경력 및 희망학과에 대한 기여도, 학위취득 이행계획 등 소속변경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정한다. (경고 이상의 징계 1건당 5점 감점)